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86호, 2022. 12. 30., 일부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p><b>제1장 총 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li> <li>“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li> <li>“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li> <li>“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li> </ol>	<p><b>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b>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집·운반하는 활동</li> <li>분리·선별하는 활동</li> <li>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li> <li>파쇄·압축·절단·용융·분리·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li> <li>중화·산화·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li> <li>사료화·퇴비화·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li> <li>소성(燒成)·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li> <li>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li> </ol> </li> </ol>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 · 분리 · 선별 · 파쇄 · 압축 · 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 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 · 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 · 가공 · 조립 · 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 · 장비 · 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순환자원을 수집 · 운반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 (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 · 고철 등을 수집 ·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4조 (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장비 · 설비 등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p>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설</p> <p>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回收)·이용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설비</p>
<p><b>제3조(기본원칙)</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p> <p>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p> <p>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p> <p>3. 발생된 폐기물을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p> <p>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p> <p>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 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p> <p>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p>	

<p><b>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p>		
<p><b>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b>제6조(사업자의 책무)</b>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b>제7조(국민의 책무)</b>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p>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순환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p>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p>	
<b>제9조(순환자원의 인정)</b> <p>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li> <li>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 할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p>		
<b>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b> <p>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li> <li>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바이오티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li> </ol> </li> <li>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li> <li>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 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li> </ol> </li> </ol>		
<b>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b> <p>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p>		
<b>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b> <p>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li> <li>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li> <li>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li> <li>4.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li> <li>5.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li> </ol>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li> <li>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li> <li>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li> </ol>		
<b>제7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b> <p>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p>		

- 또는 법인 · 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 · 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유해물질, 수분 및 유기물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 자료
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사본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 시설
  - 다. 「소음 · 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 · 진동 방지시설
  - 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原綿)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9. 다음 각 목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7. 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 한다)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제10조(순환이용사업자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중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유리용기류

3. 고철

**제10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환이용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3. 31. >
-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3. 31.>

##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 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법 제11조 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 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자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0. 16.>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4. 9.>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4. 9.>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  
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  
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2019. 4. 9.>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  
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9.>
  -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  
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  
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p>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p> <p>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p> <p>⑧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 · 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4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 · 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 ·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p>제10조(자원순환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li> <li>나. 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li> <li>다. 발생원별 · 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可燃分), 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분석</li> <li>라. 발생원별 · 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 분석</li> <li>마.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 · 용도별 재활용 현황</li> <li>바. 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li> <li>사. 폐기물의 재활용 · 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li> <li>아.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li> </ul> </li> <li>2. 폐기물 발생 · 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또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li> </ul> </li> </ol>	

		<p>나.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빛 재활용 · 처분 방법별 현황(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포함한다)</p> <p>다.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업체 현황</p> <p>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p> <p>마.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p> <p>바.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p>
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		
<p>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 ·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p> <p>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p> <p>3.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인 에너지회수율</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 ·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p>	
<p>제15조(시 · 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 ·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 ·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p>	<p>제12조(시 · 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 관리) 시 ·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p>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 · 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 · 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 ·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 · 도에 필요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 ·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 ·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 · 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6조제6항에서 “명단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개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 · 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13조(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 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신설 2019. 3. 25.>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 · 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3. 25.>
-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다음 연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5.>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자원순환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3. 25.>

-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5.>

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9. 3. 25.>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5.>

1.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재료·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5.>

⑨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25.>

1. 법 제26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p>3. 자원순환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p> <p>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순환성과 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자원순환 목표 설정·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lt;개정 2019. 3. 25. &gt;</p>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이용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순환이용사업자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p>제1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li> <li>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li> <li>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li> </ol> <p>②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지류</li> <li>2. 폐유리용기류</li> <li>3. 고철</li> </ol>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원순환성과 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이용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 관리나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체명</li> <li>2. 대표자</li> <li>3. 소재지</li> <li>4. 설립 목적</li> <li>5. 사업 범위</li> </ol>
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 3. 31.>>

1. 정관
2.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 명세서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회원명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등에 대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20. 5. 26.>>

1.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등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 마.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2.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등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3.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4. 제품등의 내구성(耐久性)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율 발생량, 순환 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 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한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의 개선 권고)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 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생산자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생산자등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3.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의 내용

	<p>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li> <li>2.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li> </ol>	
<p><b>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b>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b>제14조(품질표지의 표시 정보)</b>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물질 함유량</li> <li>2. 유해물질 함유량</li> <li>3. 크기, 규격 등 순환자원의 성상(性狀)</li> <li>4. 그 밖에 품질표지에 표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li> </ol> <p><b>제15조(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지정)</b>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li> <li>2.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li> </ol>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17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등)</b>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li> <li>2. 표시하려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li> <li>3.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li> <li>4. 품질표지 표시내용 등이 포함된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li> </ol>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li> <li>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li> <li>3. 영 제14조 각 호에 따른 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li> <li>4. 품질표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순환자원 등에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경우</li> </ol>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 제16조(품질표지 인증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 품질표지에 표시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공정·품질 심사를 실시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표지 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받을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표지를 해당 순환자원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5.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6.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지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분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표지 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3. 31.>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환이용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5.>

1. 영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 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 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 ⑧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 ⑨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 를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분 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3.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4., 2019. 3. 25.>
1. 영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나.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한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로서 별표 5 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4.>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

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4.>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영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3. 영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4. 영 별표 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영 별표 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영 별표 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도서(島嶼)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7. 영 별표 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4.>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1. 8. 31.>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조정한 교부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 8.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의 산정 및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영 별표 5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징수기관은 영 제1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5.>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5.>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제1회분은 5월 20일까지로 하고, 제2회분은 7월 20일까지로, 제3회분은 9월 20일까지로, 제4회분은 11월 2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 3. 25.>

	<p>정한다.&lt;신설 2021. 8. 31.&gt;</p> <p>④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lt;개정 2021. 8. 31.&gt;</p>	
<b>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b>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li> <li>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li> <li>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li> <li>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li> <li>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li> <li>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li> <li>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li> </ol>	<b>제26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b>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li> <li>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li> <li>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li> </ol>	
<b>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b> 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li> <li>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21조제8항에 따른 교부금</li> </ol>		<b>제21조(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b> 법 제23조제3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li> <li>자원순환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li> <li>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 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유해물질, 수분 및 유기물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p> <p>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p> <p>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lt;개정 2022. 3. 31.〉</p> <p>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lt;신설 2022. 3. 31.〉</p>
--	---	---

<p><b>제25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b>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p>③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p>		<p><b>제12조(시·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b> 시·도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자원순환 목표 및 달성도</li> <li>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li> <li>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li> <li>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li> </ol>
---	--	---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그 밖에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3. 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제23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게 필요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 · 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 · 고철 등을 수집 · 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 · 기술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7조(법 제상 · 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 ·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 · 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 연구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인력 · 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전시회 · 세미나의 개최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장 보착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3. 제17조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
4.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5.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을 생산 · 가공 · 수입 · 판매하는 자
6.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7.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 · 징수 대상자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 ·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 · 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

**제24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 · 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환이용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생산 · 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납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0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1. 8. 31.>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

금의 100분의 5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

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조정한 교부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 8.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의 산정 및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8. 31.>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21. 8. 31.>

####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8. 12. 4.>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 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의 강제 징수
- 라.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 마.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 분할  
납부
- 바. 제2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로 한정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 · 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  
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 법 제10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 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검사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  
과 · 징수로 한정한다)
-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  
정 2018. 12. 4.>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원순환성과  
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 관리, 목표의 재  
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이행실적  
의 평가

- |  |
|--|
| <p>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같은 호 각 목의 업무</p> <p>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p> <p>5.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정보 공개</p> <p>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br/>(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li> <li>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br/>(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li> </ol> |
|--|

**제32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항 또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인정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3.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4.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5.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 및 인증 취소

6.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7.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